

[전직금지쟁점] 연구개발부분 14년 경력직원 자발적 희망퇴직, 퇴직위로금 지급, 경업금지 2년약정, 위반 시 위약별로 퇴직위로금 반환 약정 BUT 동종업체 이직, 위약별로 퇴직위로금 반환명령 판결: 수원지방법원 2018. 8. 16. 선고 2017가단542556 판결



경업금지약정 사안의 쟁점

퇴사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인정여부 핵심 쟁점,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 가능성이 높지만,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 - 경업금지 약정 유효

판결요지

법원은 본 사안에서 퇴직위로금을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판단, 퇴직 시 서명한 합의서 유효, 합의서에서 경업금지 조항 위반시 위약별로 퇴직위로금 반환한다는 조항 효력 인

정함.

판결이유

3) 피고는 2016년 말경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2017. 1. 19. 반려하자, 2017. 1. 20. 희망퇴직이 불가하면 의원사직이라도 하겠다고 원고에게 통보한 점, 이에 원고는 퇴사 후 기술유출 등을 우려하여 피고를 희망퇴직자로 인정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87,904,1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, 피고가 퇴직시 작성한 2017. 2. 6. 합의서 제7조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위약벌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, 피고는, 자신이 C로 전직한 사실이 원고에게 알려지자, 2017. 6. 13. 원고 측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퇴직위로금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뿐 그 과정에 원고의 잘못이 있다거나 원고가 피고를 불리하게 처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나아가 피고가 수령한 퇴직위로금 87,904,100원 전액 내지 그 일부는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.

첨부: 수원지방법원 2018. 8. 16. 선고 2017가단542556 판결

영업비밀, 기술유출, 경업금지, 전직금지, 민형사소송, 다수사건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